

경쟁법학외 춘계 학술대회

경쟁법학회(회장 서울대 권오승 교수)는 4월 15일(금요일) 서울대 법과대학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카르텔규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의 기조발표, 이호영 한양대 교수, 정중원 공정위 공동행위 과장,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문 요약

■ 허선국장

- 1994-2004년까지 최근 10년간 카르텔 시정조치 실적이 1981-1993년까지의 실적에 비해 9배 증가(28건→244건)한 것은 카르텔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향후 보완과제로서 경제분석의 강화, 과징금의 상향조정(OECD의 부당이득 수준), 강제조사권(카르텔조사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권 부여) 등을 언급하였다.

■ 이호영 교수

- 과점시장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가격공포나 정보교환 같은 묵시적 사업조정행위(묵시적 합의, conscious parallelism, concerted action 등)도 외관의 일치가 있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의 유연화를 강조하였다.
 - 상당수의 주요시장이 안정적인 과점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우 과점기업의 다양한 묵시적 사업조정행위(가격공포나 정보교환 등)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해서 신현운 교수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상 합의의 개념을 공동행위성보다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하종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과점시장의 경우 추정조항을 확대적용 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정중원 과장

- 법적용 투명성 제고 및 신고 촉진을 위해 “카르텔 주도자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개선하였다.

- 신청기업들이 자신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 등 불확정개념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요건으로는 ①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 ②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다수가 카르텔 주도자의 악용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카르텔에 있어 카르텔 주도자인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된다.

■ 흥대식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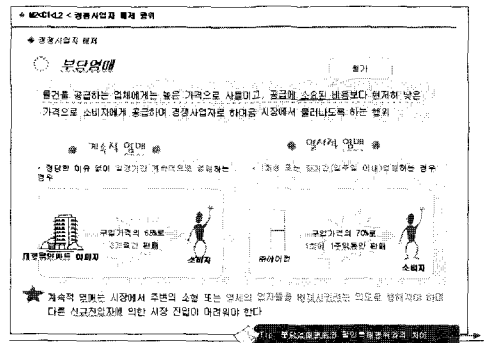
-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정조치 관련
 - 현재 상태에서 부작위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작위명령의 가능성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작위의무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과징금 관련
 - 과징금은 부당이득 박탈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을 모두 가진 것이나, 전자를 중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과징금 부과여부 및 산정에 대해 공정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공정거래교육 콘텐츠 판매안내

본 연합회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제조일반/유통서비스 2개 과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공정거래교육 콘텐츠의 주요특징

-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12명의 집필·직강
- ▶ 최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콘텐츠 구성
- ▶ 최신 교수설계기법 적용(Goal based Scenario, Entertainment 동영상 강의)
- ▶ 고품질 All Flash 형태 및 입체적인 학습설계를 통하여 보다 쉽게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
- ▶ 고용보험 적용과정(4주-20일차)으로 구성



❖ 온라인 공정거래교육 콘텐츠 목차

제조일반	유통서비스
공정경쟁과 기업활동	공정경쟁과 기업활동
공정거래법(경품고시 포함)	공정거래법(대규모소매점고시/경품고시 포함)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운영	방문판매법
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법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 교육내용 맛보기 사이트 : <http://contentsone.co.kr/demo/kcfc/M2/start.html>

* 자세한 정보는 본 연합회 홈페이지(www.kcf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본 연합회 준법지원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